

기업 · 국민에게 과도한 경제형벌 부담, 30% 개선 추진

(해당 실 : 차관보실, 과: 기업환경과, 담당자: 박성우 사무관, 전화번호: 044-215-4634)

I. 추진 배경

- 우리나라 경제형벌은 **약 6천여개**로 일상적·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도 과도하게 형벌규정이 적용되는 등 **사회적 부담**으로 작용

⇒ 대통령 지시* 이후 **1년 내** 전 부처 경제형벌 **30% 개선**을 목표로 「경제형벌 합리화 TF」(기재부·법무부 차관 공동단장) 즉시 출범(8.1~)

*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TF 곧바로 가동(7.30)

II. 정책 내용 : 출범 2개월만에 신속추진 가능한 **110개 개선과제** 마련(9.30)

- ① **(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)** 추상적 요건으로 적용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까지 제약하던 **형법상 배임죄 72년만에 폐지 추진***
* 기업의 자율성·예측가능성을 보장하면서도 처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입법 마련
- ② **(형벌 완화 & 금전적 책임성 강화)** 형사처벌 중심의 책임 구조를 과징금 등 **금전적 책임 구조로 전환** → 위법행위의 실효적 억제
- ③ **(경미한 위반 과태료 전환)** 형벌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일반국민의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해 형벌이 아닌 **과태료 부과** → 전과자 양산 방지
- ④ **(先행정조치-後형벌부과)** 형벌이 최후의 수단이 되도록 시정명령 등 **행정조치 부과 후 미이행시 형벌 적용** → 과잉처벌 관행 개선

III. 성과 및 기대효과

- **(신속 추진)** 72년만의 배임죄 폐지, 대체입법(요건 명확화, 처벌범위 축소) 마련, 2개월만에 **110개** 개선과제 마련 등 속도감 있게 추진
- **(국민체감형 성과)** 경제단체·협단체 건의를 적극 반영하여 현장에서 체감가능한 **개선과제** 마련(여객자동차법·가축분뇨법·생계형적합업종법 등)
- **(경제활력 제고)** 기업 경영활동의 **예측가능성**을 제고하고, 중소기업·소상공인이 규정 오인·미인지로 억울하게 전과자로 전락하는 상황 방지

▶ '26.上까지 전 부처 경제형벌 30% 개선을 목표로 추가과제 발굴 중